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[별표 6의2],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(고시 제2023-68호) 제15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5. 10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



- 1. 건 명 : 제적처리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잔액의 전액차감, 90일간('24.4.11.~'24.7.9.) 지원·용자 및 수강 제한처분 통지 공시송달
- 2. 근 거 :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[별표 6의2],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35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사유
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
석*원	1964-08-01	서울 성북구 (이하생략)	• '23.12.8.자 제적처리 및 직업 능력개발계좌 잔액 전액 차감 • 90일간 지원·용자 및 수강 제한	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 및 훈련비용·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 함	폐문부재

- 4. 공고기간: '24. 5. 10. ~ '24. 5. 24. 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신승호 주무관(전화번호: 02-2171-17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